(제8-2-1호)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1.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케이디비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대한민국)	대표이사	KDB산업은행, 칸서스자산운용주식회사
		자본금(원)	6,000,000,000	회사와 관계	업무집행사원
		발행주식총수(주)	6,000,000,000	주요사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영위사업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6,000,000,000(좌)			
	취득금액(원)	6,000,000,000원			
	자기자본(원)	35,515,114,784원			
	자기자본대비(%)	16.89%			
	대규모법인여부	아니오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26,000,000,000(좌)		
		지분비율(%)	2.74%		
4. 취득방법		현금 취득			
5. 취득목적		PEF 투자			
6. 취득예정일자		2015.01.05			
7. 자산양수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취득가액/자산총액(%)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해당사항없음.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12.16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케이디비칸서스밸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임.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2013년	616,762	1,799	614,963	643,000	25	-7,242
2012년	616,765	1,819	614,946	635,740	2	-7,320
2011년	616,889	1,823	615,065	628,540	35	-7,271

<기재상의 주의>

주1)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2.5)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이상인 법인의 경우 100분의5)]이상의 타법인 발행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신탁업법에 의한 신탁계약(당해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함)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간접투자기구(당해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함)를 통한 취득을 포함)]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신고한다. 다만,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 방법의 출자 또는 금융기관의 단기매매증권의 취득(담보권 등 권리실행에 의한 출자를 포함)의 경우는 제외한다.

※ 본 신고서식에 따른 신고일 이전 1년간에 있었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의 누계금액을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한다.

주2) "회사와 관계"란은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계열회사, 기타 등을 기재한다.

주3) "취득금액"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실제 취득가액을 기재한다.

주4) "대규모법인여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이상,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주5) "취득방법"은 현금취득,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에 의한 취득,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 사모간접투자기구를 통한 취득 등 해당취득방법을 기재한다.

주6) 자본잠식법인은 "자기자본"에 최근의 자본금을 기재하고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상기 자기자본은 자본금임을 기재한다.

주7) "자산양수신고서 제출대상 여부"는 코스닥상장법인에 한하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8제1항제5호(양수하고자 하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이상)에 해당하여 자산양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예"를 선택한다.(자산총액 및 비율은 모두 기재)

주8) "우회상장 해당 여부(자산양수신고서 제출일 이후 6월이내에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및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는 코스닥상장법인에 한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의3제2항의 해당여부를 기준으로 이를 기재한다.

주9) "향후 6월이내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는 코스닥상장법인에 한하여 자산양수신고서 제출일 이후 6월이내에 코스닥상장법인이 당해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를 기재한다.

주10) 상기 기재사항 외의 타 법인출자와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주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당해 신고사항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100억원이상)" 해당여부를 기재한다.

주12)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외국지주회사 포함)의 자회사(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을 기재하되,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